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3
----------	-----

2024. 3. 22.(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최정훈 의원 등 7인
- 나. 제출일자 : 2024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 라. 상정일자 : 2024년 3월 14일
 -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훈 의원)

가. 제안사유

-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필요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통해 합계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자녀 양육휴가를 시범적·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자녀 양육휴가 사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0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도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제10항 본문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단서에서 부부가 모두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타 시도 조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3일’ 또는 ‘5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하거나 ‘만 2세’, ‘만 4세’,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에 대해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연가 일 소진 후’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이 수반됨.

- 본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 양립 등 미시적·현상적 접근에서 벗어나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과 종합적, 구조적 접근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과 특히 보수적인 사업장 분위기 및 기업문화 등의 이유로 제도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사각지대는 개선해야 할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보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북연구원이 2023년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돌봄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⁴⁾되었으며, 각종 연구보고서⁵⁾에서도 금전지원과 더불어 가족돌봄휴가 등의 지원 정책이 수반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위와 같은 근거로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을 살펴볼 때,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녀가 둘 이하의 경우 연간 7일의 특별휴가를 지급, 셋 이상일 경우에 연간 12일의 휴가 지급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4) 충북연구원이 2023년 11월 발간한 ‘저출생·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도민 심층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돌봄지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필요성 측면에서 ‘매우 필요’가 391명으로 74.6%였고, ‘약간 필요’도 119명(22.7%)에 달하였으며 효과성에서도 307명(58.6%)이 ‘매우 효과’, 187명(35.7%)이 ‘약간 효과’인 것으로 집계됨.

5) 박해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휴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20일

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3.7.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⑨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 및

투표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⑨ (생략) <u><신 설></u>	제14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u> <u>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6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향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소속 직원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